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 심한 강우 시 지하차도 통제를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(법률 제21172호, 2025. 12. 2. 공포, 2026. 6. 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도로의 부속물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2. 19. ~ 3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”을 “충격흡수시설”로 한다.

제7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하차도에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(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도로의 부속물)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(이하 “도로관리청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	제3조(도로의 부속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방호울타리, 충격흡수시설, 가로등, 교통섬, 도로반사경, 미끄럼방지시설,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·관리용 재료적치장</u>	4. <u>충격흡수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78조(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(이하 “긴급 통행제한”이라 한다)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8조(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<u>지하차도에 강우 등으로 인해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</u>

5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<u>(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</u> <u>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)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22